

의안번호	2216814
의 퇴 인	김선민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계번호	26C0633

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·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·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조 (위원회의 설치)	○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조사·분석을 통하여 응급실 뽕뽕이 사망사건의 발생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응급실 뽕뽕이 예방·근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 조사·분석위원회를 둠	의무규정
2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○ 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1항) ○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8조 (위원회의 활동기간)	○ 위원회는 최초 조사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함(제1항) ○ 위원회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4	안 제14조 (사무국의 설치)	○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둠(제1항) ○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둠(제2항) ○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·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사위원회의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	의무규정
5	안 제16조 (사무국의 존속기간)	○ 사무국은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 (위원회의 설치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2	안 제5조 (위원회의 구성)	
3	안 제8조 (위원회의 활동기간)	
4	안 제14조 (사무국의 설치)	
5	안 제16조 (사무국의 존속기간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조사·분석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 - 안 제2조제4호에 따른 “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”이란 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이 거부되거나 이송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렀거나 응급의료 제공 지연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건 중 위 위원회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을 말함
 -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건을 말함
- 제정안에 따라 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와 사무국을 운영할 경우, 이를 위한 설치·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위원회와 사무국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의 수에 따른 필요 인력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현재 응급실뽕뽕이사망사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재함
 - 또한, 제정안은 사무국의 조직, 운영 및 사무국 직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

-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¹⁾의 경우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[별표 8]을 통해 사무국 공무원 정원(16인)을 정하고 있음
- 다만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은 건강보험료 분쟁에 비해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 규명의 절차가 더욱 복잡하므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규모를 준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

1)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, 보험료등,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신청하였으나 불복하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